

기본증명서 발급 방법

- (제출서류)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기본증명서'는 필수 제출 서류임.
 - 기본증명서는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개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'특정-개명·성본변경'으로 제출하여야 함.
- (발급방법) 기본증명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.
 - (방문 발급)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*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, 증명서 발급 시 1통당 수수료가 발생됨.
 - * 관할 처리기관은 정부24(<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>)에서 확인 가능
 - (인터넷 발급)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함.



-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발급하여야 함.
 -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, '일반' 유형의 서류가 아닌 '특정-개명·성본변경' 유형으로 선택·발급함.
 - 상세증명서로 개명사실 확인 가능하나 출생, 사망, 인지, 친권 등 모든 사항 함께 포함됨.



가족관계등록부

- 가족관계증명서
- 기본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입양관계증명서
-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
영문증명서

제적부

나의 발급 이력

증명서 권위확인

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

1.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.

- 본인 가족

2.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. [자세히](#)

-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
3. 일반증명서, 상세증명서, 특정증명서 중 선택해 주세요. [예시](#)

-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

ⓘ 본인의 출생, 사망,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.

개명사실 확인 필요시, 특정-개명·성본변경

※상세증명서는 개명사실 포함 모든 사항 증명됨

4. 주민등록번호(뒷부분 6자리)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.

-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

5.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.

-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[자세히](#) 화면 열람

ⓘ 증명서를 프린터로 직접 인쇄합니다.

6.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.

-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

[신청하기](#)

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